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72
----------	-------

발의연월일 : 2025. 9. 23

발 의 자 : 서범수 · 이현승 · 안철수
박충권 · 김문수 · 한지아
우재준 · 권영진 · 김장겸
조은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국가 핵심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법률에 일부 열거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산업 환경 변화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제정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정·관리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와 조세 지원의 근거가 되는 본법의 기술 범위가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적 혼선을 야기하고 법 체계의 통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육성
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정의와 일치시켜 국가 기술
육성 정책과 조세 지원 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며, 기술 변화에 대한 정책의 신축적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 핵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 범위 변경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전략기술 범위 변경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어 연구·

인력개발에 착수한 경우 및 제24조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에 투자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 ----- ----- ----- ----- ----- ----- ----- ----- ----- ----- ----- ----- 1. (생략)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	2.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

